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15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7
1. 생태자연도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예시	7
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현황	8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4일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등을 기반으로 시가지, 녹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 동식물 현황 등을 조사·평가하여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이며,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됨.

그런데,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사가 배제되어 있어 도(道)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활용이 어렵고, 도에서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현행법은 시장으로 하여금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① 시장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 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② 도지사가 시장이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도지사가 관할 도시지역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 ③ (생략)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 <u>다만, 시장이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u>

현행	개정안
⑤·⑥ (생략) <신설>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도지사는 관할 시 또는 군에 소재한 도시지역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또는 군수(「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 또는 군의 장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 시장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방법,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현행	개정안
	<u>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지사가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제3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를 말하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및 정밀조사에 따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¹⁾,

1)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²⁾를 작성하고,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³⁾,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광역적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2024년에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할 지역 31개 시·군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지사

-
-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생태정보지도로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생태적 네트워크의 형성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3)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도지사가 해당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검토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품질 향상 및 활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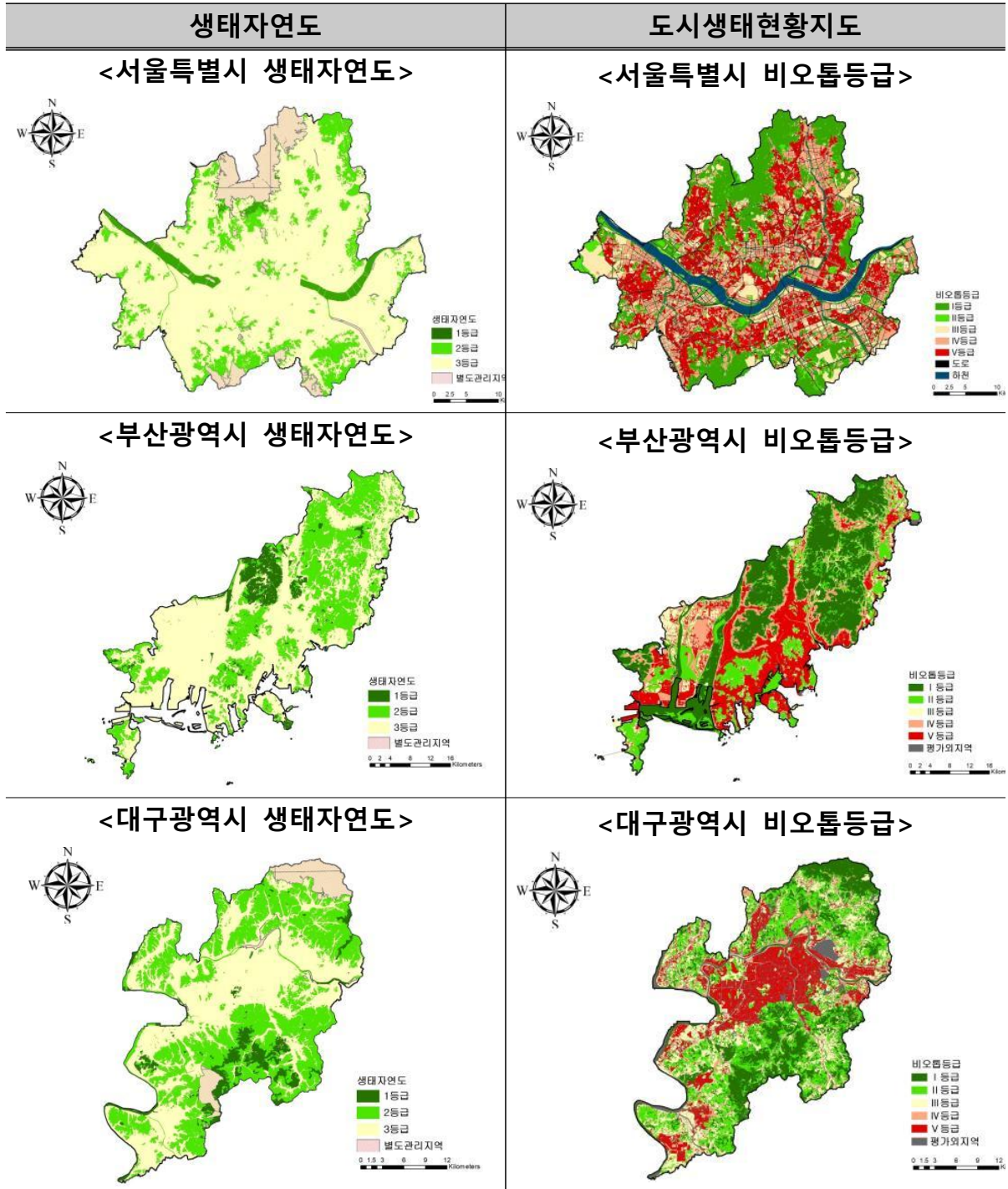
다만,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사유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유를 각 호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군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대한 작성 의무·권한 등이 부재하므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한 도지사의 협의 대상(안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도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생태자연도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예시



※ 출처: 환경부

2.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현황(2024년 12월 기준)

- (작성현황) 작성의무 대상 총 84개 지자체 중 81개 지자체 작성 완료, 3개 지자체는 작성 중이거나 작성 예정

구 분	지자체(84개)
작성 완료 (81개)	서울, 부산, 대구, 광주(광), 대전, 인천, 세종, 제주, 수원, 성남,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여주, 포천, 이천, 춘천, 원주, 태백, 삼척, 속초, 강릉, 동해, 당진, 청주, 충주, 제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목포, 여수, 순천, 남원, 포항, 김천, 안동, 경주, 상주,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경산,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작성 중 (2개)	나주, 광양
작성 예정 (1개)	울산

※ 출처: 환경부